

중앙설계심사위원회운영세칙 (1983. 5. 12제정)

건설부훈령 제600호

설계심사위원회규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설계심사위원회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건설부장관 ㉑

제 1 조 (목적) 이 세칙은 중앙설계심사위원회(이하 “중앙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심의) 중앙위원회(개별심의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심의회는 공사내용의 설명, 질의, 검토, 의견 발표, 토의 및 의결순으로 심의한다. 다만, 설계심사위원회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 3조제 1항제 4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사내용의 설명 및 질의는 생략할 수 있다.

제 3 조 (심의의결) ①일반공사의 설계인 경우에는 원안 채택, 조건부채택 또는 설계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원안채택”이라 함은 설계심사위원회규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 3조제 1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결함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계를 말한다.
2. “조건부채택”이라 함은 규칙 제 3조제 1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결함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한 후 시행하거나 당해 중앙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를 말한다.
3. “설계재심의”이라 함은 규칙 제 3조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결함사항이 중대하여 재설계를 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를 말한다.

②대안입찰을 위한 설계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또는 조건부 대안채택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대안채택”이라 함은 규칙 제 3조제 2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결함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설계를 말한다.
2. “조건부대안채택”이라 함은 규칙 제 3조제 2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결함사항을 수정 또는 보완한 후 시행하거나 당해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를 말한다.

③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(이하 “특례규정”이라 한다) 제 7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“설계적격”이라 함은 규칙 제 3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심사를 한 결과 당해설계의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40점 이상인 설계를 말한다.

제 4 조 (회의록 작성) 중앙위원회의 심의회의에 대한 회의록은 별지 제 1호서식과 같이 한다.

제 5 조 (위원의 구성) ①중앙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전문적인 학식과 사회적인 덕망이 있고 공정하며 면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.

1. 당해분야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
2. 당해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
3. 당해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
4.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
5. 정부기관의 당해분야에서 3급이상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자
6. 정부투자기관의 당해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임원

②위원의 구성은 이론과 실무간의 연계를 위하여 교육기관, 연구기관, 용역업 및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다.

제 6 조 (시공평가요령) 규칙 제11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령서는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다.

제 7 조 (대형공사의 채점등) ①특례규정 제 7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시설공사의 내용과 별표 설계배점기준을 고려하여 당해설계총점수가 100점이 되도록 배점표를 작성하여 중앙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위원장은 그 배점표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공사의 내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배점기준의 배점범위를 초과하여 배점표를 작성할 수 있다.
2. 위원(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사전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가를 포함한다)은 위원지명시 지정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채점표를 작성하여 회의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 하여야 한다.
3. 개별심의회 의장은 설계배점기준의 전문분야(이하 “전문분야”라 한다) 전체에 대하여 채점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장은 전문분야 전체에 대하여 채점하여 그 점수를 개별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별심의회 의장은 이를 참고로 하여 채점하여야 한다.
4. 개별심의회 의장과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것을 당해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로 하며 전문분야별로 채점된 설계점수를 합하여 당해 설계도서의 설계점수로 한다.
5. 전문분야별 설계점수의 소숫점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 사사오입한다.

②설계점수를 통지할 때에는 입찰자별 설계도서의 채

	라. 시설물 규모 및 형식 선정 마. 공법 및 기능성 바. 시공성 및 공정계획 아. 조경 및 환경계획 사. 구조물 조형미 자. 기타사항		
2. 구조계산	가. (주요) 구조물의 단면결정 및 구조적 안정성 나. (계약) 구조계산 내용 다. 기타사항	15~30	(주)괄호는 기본 설계시 적용됨.
3. 주문 및 수리 계산	가. 주문 및 수리계획 나. (계약) 주문 및 수리계산 다. 기타사항	15~30	
4. 토질 및 기초	가. (계약) 토질조사 및 시험 나. 기초 구조의 선정 및 안정성 다. 기타사항	15~30	
5. 기계설비	가. 기계설비 계획 나. 유지관리 다. 기타사항	5~20	
6. 전기설비	가. 전력설비 계획 나. 약전 및 소방설비 다. 에너지 절감 라. 기타사항	5~20	

7. 건축	가. 건축사항 나. 기타사항	5~10	
계		100	

전문분야

건축분야	구 분	배 점
1. 건축계획	(1) 단지계획 및 배치도	28~32 7~11
	(2) 평면도	14~21
	(3) 입면도 및 기타	7~10
2. 조 경	(1) 조경계획 및 배식 평면도, 토공계획도	2~6 1~4
	(2) 조경시설물, 체육·유희 시설물계획도 및 기타	1~2
3. 건축구조	(1) 단면도	12~18 4~6
	(2) 구조(설계도) 및 기타	8~12
4. 건축시공	(1) 공법 및 시공	10~14 4~6
	(2) 각종 상세도 및 기타	6~8
5. 기계설비	(1) 위생계획	14~20 5~7
	(2) 난방계획	7~9
	(3) 유지관리	1~2
	(4) 냉방, 자동제어, 환기설비 및 기타	1~2
6. 전기설비	(1) 전력설비	9~16 6~11
	(2) 약전 및 소방설비	2~3
	(3) 에너지절감 및 기타	1~2
7. 토 목	(1) 상하수도계획	3~6 1~2
	(2) 도로 및 포장계획	1~2
	(3) 토공 및 기타	1~2
계		100

공동주택관리규칙중개정령(1983. 6. 25개정)

건설부령제358호

공동주택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영 제3조제1항제5호”를 “영 제3조제1항제6호”로 한다.

제3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

제4조 제1호중 “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”를 “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및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”로 하고, 동조 제2호중 “이해관계인의 동의서”를 “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”로 하며, “건축법시행규칙 제1조의 도서”를 “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 서류 및 도서”로 하고, 동

제4호중 “사업계획승인서 사본”을 “사업계획 승인서 사본,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동의서”로 하고, “건축법시행규칙 제1조의 도서”를 “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 서류 및 도서”로 한다.

제6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제7조 본문중 “영 제10조제10항제4호”를 “영 제10조 제10항제5호”로 한다.

제11조 제2항중 “통보를 받은 날까지”를 “통보를 받은 후 1월이 경과한 날까지”로 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 (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등) 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,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영 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주요시설의 범위와 내구연한은 별표5와 같다.

[별표2]의 정기진단란중 해빙기진단란의 대상시설중“교량”다음에 “·우물비상저수시설”을 추가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의 (이면)구비서류란의 제1호중 “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”를 “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”로 하고, 동 제2호중 “이해관계자의 동의서”를 “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”로, “건축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”를 “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”로 하며, 동 제4호중 “사업계획승인서 사본”을 “사업계획승인서 사본,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동의서”로, “건축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”를 “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”로 하고, 사무처리흐름도의 경유기관란중 경유기관을

경유기관
시장 또는 군수

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